

춘천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3519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5. 2.

## 주 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2. 2.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2022. 3. 18. 접수 제11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는 B를 상대로 2018. 3. 26.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27099)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8. 4. 13.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B는 C에게 102,440,210원 및 그 중 28,523,818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그 청구원인은 'C가 금융기관들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B는 C에게 양수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C는 2018. 12. 27.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C를 대리하여 B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8. 7. 피고(B의 아들)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2.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B(상속지분 3/7)와 망인의 아들들인 피고(상속지분 2/7), E(상속지분 2/7)가 있었는데, B, 피고 및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2022. 2. 19.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8.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만 해도 위 102,440,210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8, 10, 13 내지

1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 1)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채권양도인 C의 채권 보유 여부

피고는 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채무자인 B가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C는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C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인바[광주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전주)2020나12306 판결(상고기각)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C가 B를 상대로 양수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채권은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것인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확정된 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효력 유무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채무자인 B가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한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는 2018. 12. 27.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19. 7. 30. B의 주소로 B를 수신인으로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9. 8. 7. 피고(B의 아들)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통지는 사회통념상 B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B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음에 있어 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시효소멸 여부

피고는 원고가 최종양수받은 B에 대한 채권은 2002년 및 2003년에 발생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고 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는 B를 상대로 2008. 4. 4.자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2008차전398)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8. 4. 4.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B를 상대로 위 2018. 3. 26.자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8. 4. 13.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만약 피고의 주장을 위 지급명령 확정일인 2018. 4. 13. 전에 이미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원고가 양수한 C의 채권이 위 지급명령 확정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지급명령 확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피고의 주장을 위 지급명령 확정일인 2018.

4. 13. 이후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일인 2018. 4. 13.부터 기산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을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채무자와의 채무조정 합의 여부

피고는 B가 원고 사이에 채무를 11,454,238원으로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22. 4. 5. 원고에게 채무조정 요청을 하면서 당시 채무액이 117,420,307원임을 승인하고 11,454,238원으로 채무를 감액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는 위 신청 당시 B 본인이 공부상 소유재산(법적 조치된 부동산 등은 공부상 존재와 관계없이 포함)이 없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 발견되어 채무조정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에 부담할 채무 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상환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겠으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채권행사(B의 채무조정 요청 이후 취득·소유 재산 포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채무액을 확정적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채무조정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설령 피고 주장의 채무조정약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조정약정 당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 등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 내용이 효력이 상실하는데, B는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B 자신이 상속하는 재산이 있음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채무조정약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협의를 중 B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별지